

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

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청사방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,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4월 27일

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장

1. 설치목적

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의 청사방호 및 시설물 보호와 검찰청사내 피의자 수용실 환경개선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추가설치 필요

2. 관련근거

- 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- 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3. 설치장소 및 대수 : 본관 1층 형사조정실 2대
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0년 4월 27일~2020년 5월 11일

5. 촬영범위 및 시간 : 설치장소 주변을 24시간 움직임 감지 연속촬영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(2020.4.27. ~ 2020.5.11.)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)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, FAX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기관,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의견제출 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FAX(043-841-4555)
- 라. 보내실 곳 : (우)27357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총무계
- 마. 문의사항 안내 :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계 043-841-4547, 정보통신계 043-841-4550

※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